

진영국토관리사무소

수신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9 향군빌딩(향군회관 2층) (주)유아이산업 대표 (경유)

제 목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도로법 제96조(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)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(주)유아이산업 대표				
	주 소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9 향군빌딩(향군회관 2층)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도로점용공사 미착공 및 미준공 , 도로점용료 미납부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도로점용 및 연결허가(허가번호 : 진영2008-027호) 취소 처분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도로법 제63조(도로점용허가의 취소) 제1항 2호, 3호 위반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진영국토관리사무소	부서명	보수과	담당자	황혜자
	주소	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			전화번호	055-340-6643
	일시	2017년 5 월 01 일 16 시 부터 17 시 까지 (1 시간)			장소	소회의실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			
		성명	김 영 규			

<청문시 유의사항>

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

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각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